

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(定款)

일부개정 정관안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5년 4월 28일
제출자: (재)세종문화회관 사장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발레단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세종문화회관 내 관련 조직 및 정원 확충
 - 서울시 발레단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독립법인화 26년 → 30년 이후로 변경
 - 시범(한시) 운영 후 그 간의 성과 고려 정식 사업화 추진
 - 발레단 창단 후 산규사업 증가, 연습실 관리 및 무용수 등 관리업무 증가 따른 인력 충원

2. 주요내용

- 정관 제22조(조직 및 정원)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 - ① 항 “정원은 별표2, 별표2-1과 같으며”에서 “별표2-1”을 삭제
- 정관 內 별표2의 정원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 - 사무처 157명 → 165명, 총 정원 526명 → 534명으로 변경(+8명)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시설서비스
정원	534	1	165	244	124

- 정관 內 별표2-1의 한시정원표를 삭제한다.
 - 사무처 5명(4급 1, 5급 2, 6급 2) 한시정원표 삭제 (- 5명)

3. 정관 일부개정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												
제22조(조직 및 정원)①법인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<u>별표2와 별표2-1과 같으며</u> 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직제규정으로 한다. (개정 2019.4.16., 2020.1.21., 2023.11.29)		제22조(조직 및 정원)①법인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<u>별표2와 같으며</u> 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직제규정으로 한다. (개정 2019.4.16., 2020.1.21., 2023.11.29., <u>2025.00.00.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 칙 (2023. 11. 29.)		부 칙 (<u>2025. 00. 00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		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
〈별표 2〉(신설 2019.4.16., 개정 2020.1.21., 2020.4.13., 2020.9.24. 2023.08.03.)		〈별표 2〉(신설 2019.4.16., 개정 2020.1.21., 2020.4.13., 2020.9.24. 2023.08.03., <u>2025.00.00.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원 표 (단위 : 명)		정 원 표 (단위 : 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계</th><th>사장</th><th>사무처</th><th>예술단</th><th>시설 서비스</th></tr><tr><td>정원</td><td>526</td><td>1</td><td>157</td><td>244</td><td>124</td></tr></table>		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시설 서비스	정원	526	1	157	244	124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계</th><th>사장</th><th>사무처</th><th>예술단</th><th>시설 서비스</th></tr><tr><td>정원</td><td><u>534</u></td><td>1</td><td><u>165</u></td><td>244</td><td>124</td></tr></table>			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시설 서비스	정원	<u>534</u>	1	<u>165</u>	244	124
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시설 서비스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	526	1	157	244	124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시설 서비스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	<u>534</u>	1	<u>165</u>	244	124																							
〈별표 2-1〉(신설 2023.11.29)		〈별표 2-1〉(삭제 2025.00.00.)																										
한시정원표(2025.12.31.限) (단위 : 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계</th><th>사무처</th><th>직급</th></tr><tr><td>정원</td><td>5</td><td>5</td><td>4급 1, 5급 2, 6급 2</td></tr></table>		구분	계	사무처	직급	정원	5	5	4급 1, 5급 2, 6급 2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사무처	직급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원	5	5	4급 1, 5급 2, 6급 2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서울시발레단사업 수행인력에 한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. 참고사항

- 차기 이사회 의결 (2025년 5월 중 예정)